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5. . .	
연월일	(제 회)	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발생시 소상공인재난지원을 대비하여 과세정보 등을 수집·활용할 수 있도록 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704호, '25.1.21. 공포, '25.7.2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 시행에 필요한 자료·정보 및 그 자료·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규정(안 제9조의2 신설)

- 1) 특정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근로자 수(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)
- 2)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(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)

나.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(업무위탁, 고유식별정보 처리)을 규정(안 제12조 및 제13조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각 부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추진 예정(2025.03.~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 중 “법 제12조의2제6항”을 “법 제12조의2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2조의2제5항”을 각각 “법 제12조의2제6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) 법 제21의2 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특정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근로자 수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
2.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(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한정한다):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

제1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6(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<u>법 제12조의 2제6항</u> 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· 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 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 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	제4조의6(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) - ----- <u>법 제12조의 2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의7(손실보상금의 환수) ① <u>법 제12조의2제5항</u> 에서 “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다. 1. ~ 3. (생략)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<u>법 제12 조의2제5항</u> 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 다.	제4조의7(손실보상금의 환수) ① <u>법 제12조의2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법 제12 조의2제6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③·④ (생략)

<신설>

제1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
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·미지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) 법 제21의 2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특정시점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별 근로자 수: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

2. 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한 신용카드 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(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한정한다):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

제1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
①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제6항 -----

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
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

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
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
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
탁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삭제

<신설>

④·⑤ (생략)

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중소벤
처기업부장관(제12조에 따라 중소
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
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
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
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
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
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
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<신설>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8.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
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
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
대한 재정지원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이
영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소상공
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
수에 관한 사무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56